

윤 리 헌 장

주성은 기업윤리와 깨끗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신기술개발과 “World Best Product”실현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World Best Company”가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전 임직원이 올바른 기업관을 공유하고 정도경영을 실천하고자
“주성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우리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고객이 요구하는 최고의
가치(제품/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실현으로 주주의 투자
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경쟁원칙과 공정거래원칙을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제반
법규와 거래관습을 존중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
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여 상호 신뢰 및 협력 관계
하에 공존 및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각자가 “주성의 주인이며, 주성을 대표한다”는 인식하에 긍
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도덕성과 예의범절을 생활화하여 명예와 품
위를 지키며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건전하고 개
끗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여 각자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정당하게 보상하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건
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을 다한다.

윤 리 강 령

【전문】

주성은 윤리·준법경영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윤리적·합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기업의 시대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주성과 이해관계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경영전반에 대한 기본정신과 임직원들의 사고와 판단, 행동의 기준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 1 장 고객의 가치창조

1. 고객 존중
2. 고객에 대한 가치제공
3. 고객 보호

제 2 장 주주의 권익 보장

1. 주주의 존중
2. 주주의 이익보호

제 3 장 협력회사와의 공존공영

1. 평등한 참여기회
2. 공정한 거래
3. 상호발전 추구
4. 업무활동지원 및 직원 존중

제 4 장 공정한 경쟁

1. 법규의 준수
2. 자유경쟁시장 질서존중
3. 정당한 정보입수 및 활용

제 5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1. 기본윤리
2. 사명완수
3. 공정하고 깨끗한 조직유지
4. 임직원 상호간의 윤리
5. 회사재산의 보호 및 보안유지
6. 안전 및 위험예방
7. 윤리강령 위반시 조치

제 6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임직원 존중
2. 공정한 대우
3. 창의성 촉진
4. 인재육성
5. 안전한 사업장 환경조성
6. 윤리강령 위반시 조치

제 7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1. 합리적 사업전개
2. 사회발전에 기여
3. 정치관여 금지
4. 환경보호

제 1 장 고객의 가치창조

우리의 진정한 사업기반은 고객에게 달려있다는 신념하에 고객의 의견은 항상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확보한다.

1. 고객존중

- 가.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나.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을 위한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고객감동을 실천한다.
- 다. 고객을 경영활동의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진실한 마음과 친절한 태도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한다.

2. 고객에 대한 가치제공

- 가.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아내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 나.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 다.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품개발에 반영한다.

3. 고객 보호

- 가. 고객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항은 적극 공개한다.
- 나. 고객에 관한 정보는 고객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용도에 이용하지 않으며,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 다. 제품의 결함에 의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모든 경영 및 영업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 라. 비윤리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마. 제품에 대한 정당한 불만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응답하여 조치한다.

제 2 장 주주의 권익 보장

주성은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보호와 투자 가치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1. 주주의 존중

- 가.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
- 나. 모든 주주들에게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며 주주권을 보호한다.
- 다. 투명한 경영체계확보를 통해 주주와 상호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2. 주주의 이익보호

- 가. 기업관련 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시하여 주주 및 기업 이해 관계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 나. 적극적 홍보 및 IR활동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건전한 이익을 달성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 라. 회계자료의 처리 및 보고는 각 국가의 회계관련규정이나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한다.
- 마.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는 비공개정보 또는 기업관련 첩보를 이용 또는 유출을 하지 않는다.
- 바. 위험관리체제와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투자와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 3 장 협력회사와의 공존공영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율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존 및 공동발전을 도모한다.

1. 평등한 참여기회

- 가.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거래 협력회사 선정 및 등록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부여
- 나. 협력회사 선정 및 등록은 객관적,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거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2. 공정한 거래

- 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호 합의후 시행한다.
-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다.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 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상호 보완한다.
- 라.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외의 인가되지 않은 요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3. 상호발전 추구

- 가.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은 상호 공유한다.
- 나.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바탕으로 상호 합리적인 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업무활동 지원 및 직원 존중

- 가. 협력회사의 업무진행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 나. 협력회사와의 약속은 반드시 준수하고, 모든 협력회사 직원에 대해서 상호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 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협력회사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한다.

제 4 장 공정한 경쟁

주성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글로벌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의 자유 경쟁원칙을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를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1. 법규의 준수

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나. 해외 주재 직원도 해당지역의 법규정 및 관습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

다. 기업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

(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협약”과 한국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법” 등)

2. 자유경쟁시장 질서존중

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한다.

나. 경쟁사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경쟁활동을 추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다. 제품과 서비스의 질, 가격 경쟁력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3. 정당한 정보입수 및 활용

가.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활용한다.

나.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다.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한 비방이나 근거없는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

제 5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주성의 임직원은 정직과 성실을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기본윤리

- 가. 전 임직원은 “주성의 주인”이라는 인식하에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 나. 임직원 각자는 “주성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윤리의식과 도덕성에 기초하여 사회적 양식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2. 사명완수

- 가.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나. 주어진 직무는 직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수행한다.
- 다.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내에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
- 라. 본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험을 예측하여 관리하고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 마.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상하, 동료, 부서간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며 적극 협력한다.

3. 공정하고 깨끗한 조직유지

- 가. 모든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나. 제반 법률 및 회사의 규정을 숙지하여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한다.
- 다.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여 자신의 직위나 직책을 이용하여 사리(私利)를 도모하지 않는다.
- 라.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마. 이해 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인 금품, 특혜, 편의, 향응의 수수 등 일체의 부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바. 직위를 이용하여 약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하지 않는다.

4. 임직원 상호간의 윤리

- 가. 임직원간에는 상호신뢰, 존중을 바탕으로 기본예의를 지키고 협력적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한다.

- 나. 혈연, 지연, 성별, 종교, 학연 등에 근거한 파벌 또는 사(私)조직의 결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다. 임직원 상호간 부당한 청탁, 금전거래 행위, 개인적인 금품수수행위를 금한다.
- 라.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는 최선을 다해 이행토록 한다.
- 마. 직위를 이용한 회사업무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 바. 회사의 목표달성을 위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업무진행시 부서 이기주의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사. 제반 법률 및 윤리규정을 준수토록 임직원 상호간에 도와주고 지도한다.
- 아. 성희롱이나 장애자에 대한 모독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자. 업무수행간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연쇄적 잘못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시인하고 재발방지대책 강구를 위해 노력한다.
- 차. 임직원은 사내 근거 없는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 할 수 있는 불신폭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5. 회사 재산의 보호 및 보안유지

- 가. 회사재산을 사(私)적인 목적 또는 불법 사용 및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사의 업무 시간, 회사의 재산 등)
※ 회사 재산 : 회사 자금 및 자금으로 구입 또는 구축, 설치, 개발된 사·내외 시설, 건물, 기자재, 비품, S/W, 특허 등과 회사소유로 등록된 유·무형의 모든 것.
- 나.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해야 하며 업무수행시 업무효율성과 손익을 고려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다. 회사업무와 무관하거나 안전수칙 등 제반 법규를 미준수하여 회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변상할 책임이 있다.
- 라. 지적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정보 및 영업정보를 포함한 회사의 기밀사항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 및 첩보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한다.
- 마. 직무수행간 생성 또는 인지한 회사의 기밀사항은 적절한 절차에 의거 기록, 관리하고 비인가요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 바.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 사외로의 유출 또는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지 않는다.
- 사. 퇴사 할 때는 상기 마, 바 항에 관한 원본 및 복사본, 저장매체 등 일체의 자료를 소유할 수 없으며 퇴사시 작성 및 서명 날인한 『퇴직 보안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안전 및 위협예방

- 가.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과 위협예방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직무수행간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 나.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다. 재해,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초기대응과 함께 전력을 다하여 수습한다.

7. 윤리강령 위반시 조치

전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사항에 처해 있거나 그 사항을 목격 또는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윤리·준법 담당조직에 신고 또는 하여야 한다.

제 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주성은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올바른 윤리관을 바탕으로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임직원 존중

- 가.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각자의 기본권을 존중한다.
- 다.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원 고충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라. 임직원 개인과 가족의 건강, 교육,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2. 공정한 대우

- 가.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나.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다.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3. 창의성 촉진

- 가.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최대한 조성한다.
- 나.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하여 임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다.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조직문화 형성에 힘쓴다.

4. 인재육성

- 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회사의 무형적 자산임을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 나.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 안전한 사업장 환경조성

- 가. 회사는 임직원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생산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안전예방 의무를 다한다.
- 나. 정기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에 제한을 줄 수 있다고 예상되는 제반 시설물, 장치, 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전 지속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력한다.

6. 윤리강령 위반시 조치

본 윤리강령에 명시된 회사 또는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에 위반되는 사항에 관해 윤리·준법 담당조직에 신고 또는 제언시 즉시 합법적이고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한다.

제 7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주성은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한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합리적 사업전개

- 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나.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으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 다.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부조리를 배격한다.

2. 사회발전에 기여

- 가.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 나. 임직원들의 건전한 사회활동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다. 사회 각 계층 구성원이나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정치관여 금지

- 가.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은 존중하며 개인신분의 정치적 입장 및 정당 활동을 할 수 있으나, 회사 입장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은 제외)
- 나. 회사내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나 주성은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정치위원회에게도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4. 환경보호

- 가.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나.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다.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시기)

본 윤리강령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실천지침)

윤리강령에서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윤리강령 분야별 진단에 의거 취약점 보완에 중점을 두고 실천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실천한다.

제 3 조(소급적용)

본 윤리강령 시행이전의 행위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제 4 조(해석)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윤리경영 담당조직, 2차적으로 윤리경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판단한다.

제 5 조(포상 및 징계)

회사의 윤리경영활동에 공로가 있는 요원은 포상하고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징계한다.

제 6 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의 근거가 되는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회사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